

무허가 축사를 '18.3.24일까지 적법화 하세요

〈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('15. 11. 11) 〉



농림축산식품부



환경부



국토교통부

무허가 축사란?

가축 사육시설,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이
건축법, 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신고·허가 및
변경 신고·허가, 준공 절차 없이 지어진
불법 건축물을 말함

추진배경

- 축산업의 규모화·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따르지 않아 상당수 농가가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에 따른 무허가* 상태
* 농촌경제연구원 조사결과('11.9월) : 44.8% 무허가
- 가축분뇨 개정('14.3.24)에 가축분뇨배출시설 변경 허가·신고를 받지 아니한 경우 배출시설 변경 허가·신고 취소, 배출시설 폐쇄 및 6개월 이내의 사용중지 명령, 1억원 이하의 과징금 부과
* 가축분뇨법 제18조 및 제18조의2

추진경과

- 가축분뇨법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('12.5.7)
- 무허가축사 개선 및 가축분뇨법 개정 대응 TF 구성('12.6.25)
- 농식품부·환경부·국토부 합동 실무협의('12.7~11월)
- 무허가축사 개선 대책 발표('13.2.18)
- 무허가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 시달('15.11.11)

주요 개선 내용

가.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

- 보전관리, 생산관리, 농림,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축사 건폐율을 지자체 조례로 60%까지 상향조정(133개 지자체)
* 건폐율 적용관련 지자체 축산부서 또는 건축부서에 문의

나. 가설건축물 적용대상 확대

- 가설건축물에 연면적 100㎡이상의 가축분뇨처리시설, 가축양육실, 운동장을 포함
- 가설건축물 재질에 비닐, 천막 외, 합성수지, 합성수지와 합성강판(1/20이하) 혼용사용
*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10호, 제11호
-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사용승인 신청
* 사용기한 만료 30일전 시·군에서 안내, 농가는 만료 7일전 시·군청에 연장신청

다. 가축분뇨 처리시설 면제

- 육계·오리축사에 대해 가축 출하한 뒤 가축분뇨를 처리하고 바닥면 30cm이상 아래 방수재(비닐, 시멘트 등), 바닥면 10cm이상 왕겨, 톱밥깔고 출하시 분뇨 처리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면제
* 가축분뇨법 시행령 제9조제4호
- 처리시설 설치 면제후 분뇨처리는

- 공공처리시설, 재활용신고자 또는 가축분뇨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
- 퇴비·액비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태의 퇴비·액비를 다시 발효시켜 사용하려는 경작농가에 1일 300kg 미만 또는 1개월 최대 1톤미만 제공 가능(위탁처리내역 작성관리 필요-미작성시 과태료 부과)

*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제12조의2

라. 운동장 적용 대상 확대

- 젖소에 적용되던 운동장(1일 8시간 미만 일시적으로 머무르는 곳)을 한·육우에서도 가설건축물에 적용

* 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1

마. 축사 제한거리 재 설정(환경부 권고)

- 농식품부·환경부 합동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권고안 시달(환경부, '15.3.31)
- 축산농가에서 악취저감 노력시 거리제한 완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조례개정 필요

구분	기존 권고안 ('11.10.14)	금번 권고안 ('15.3.31)		비고
한·육우	100m	400마리 미만	50m	※ 신규 입지 시설, 허가 및 신고한 기존시설의 증·개축을 관리하기 위함 ※ 악취저감을 위해 노력하는 축산농가는 축사 신축 및 증·개축시 거리제한 완화
		400마리 이상	70m	
젖소	250m	400마리 미만	75m	
		400마리 이상	110m	
돼지	500m	1,000마리 미만	400m	
		1,000~3,000마리	700m	
		3,000마리 이상	1,000m	
닭·오리	500m	20,000마리 미만	250m	
		20,000~50,000마리	450m	
		50,000마리 이상	650m	

바.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

-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·고시 이전부터 존재한 축사에 대하여 지자체 조례 개정 이후 불법 증축한 축사에 대하여 '18.3.24일까지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가능(조례개정 불필요)

* 가축분뇨법 부칙 제8조, 제12516호

사. 대책외 제도개선

1) 위탁사육 금지 처벌 유예

- 무허가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사육업자에 대해 '18. 3. 24까지 처벌 유예
(한센인 정착촌 등 '19. 3. 24)

* 가축분뇨법 부칙 제10조('15. 12. 1 개정)

2) 방역시설 건폐율 제외

- 가축 방역·소독 시설('15.4.27 이전 설치된 가축사육시설에 한정)에 대하여
건축면적(건폐율) 제외

*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 다목, 제3호 카목

3) 이행강제금 경감

- 이행강제금 부과(50%→40%이내)기준 및 축사(500㎡이하)의 경우 1/5감경, 그 외 1/2의
범에서 감경('16.2.11 개정·시행 예정)

4) 축사차양, 지붕연결, 가축분뇨처리시설 건축면적 제외

- 축사 차양(비가림시설) 3m까지 건축면적 제외
- 축사간 연결부위 상부 폭 6m이내, 가축분뇨처리시설('13.2.20일 이전 설치)에 대해
건축면적 제외(건축법 시행령 개정중)

*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(입법예고 '15.9.9~10.19)

무허가축사 적법화 절차

① 불법 건축물 현황 측량을 통하여 측량성과도 발급

- 한국국토정보공사(구 대한지적공사) 및 측량설계사무소에 연락하여 측량

② 불법건축물 자진신고

- 측량 결과에 따라 불법건축물에 대해 '불법건축물 자진신고서' 및 건축, 가축분뇨처리시설,
산지전용 등 관련 신고·허가·준공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·군청 민원실에 제출

* 불법건축물 위반규모, 구조, 용도 및 건축년도를 포함한 확인서(불법건축물 소재 이장, 주민 등)
첨부

③ 이행강제금 부과 및 납부

- 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 발부시 20일 이내 납부
* 이행강제금과 별도로 고발 등 사법처리 가능(5년 이내 불법 건축물)

④ 건축물(가설건축물) 등 신고·허가 및 변경

- 현 부지의 건폐율을 고려하여 건폐율을 초과하지 아니할 경우 일반건축물로, 초과할 경우 가설건축물로 개축 또는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
- 가설건축물 신고 :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, 배치도, 평면도, 대지사용승락서(타인소유 대지인 경우)
* 배치도 및 평면도는 건축설계사 설계 또는 자가설계 가능
- 건축 신고·허가 : 건축허가 신청서 및 건축신고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

⑤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신고 및 허가

- 배출시설 신고·허가 및 변경 신고·허가를 아니한 시설, 건축물(가설건축물) 적법화시 사육시설 증가에 따른 배출시설 증설이 필요한 경우
- 배출시설 허가·변경허가 신청서 및 변경신고서, 시설 설치명세서, 사업장 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 배관도 등 서류를 제출
* 자진신고서 및 건축 인허가 서류 제출시 함께 제출

⑥ 임야(산지)에 설치된 퇴비사, 축사 등

- 건축 신고·허가 및 변경 신청시 '산지전용협의(변경협의) 요청서' 및 '복구의무면제신청서'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시·군청에 제출
* 이행강제금 및 불법건축물 사법처리와 별도로 7년내 불법으로 산지전용한 경우 고발 등 사법처리 가능

⑦ 축산업 허가·등록 변경

- 건축 신고·허가 등 변경으로 가축사육시설 면적이 변경된 경우 축산업 허가·등록 변경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시·군청 축산부서에 제출

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시 해당 시·군 축산부서 및 농축협 지도 담당과 상담 실시

* 세부사항은 축산환경관리원(070-4289-2310)에 문의